

의안 검토 보고

의안 번호	제 5 호		
건 명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서초구청장	제안(출)년월일	2002. 7. 15.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김 재 근		

1. 검토내용

가. 제안이유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2001. 5. 24 법률제6474호)으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의 명칭변경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로 변경함(안제명)
- 2) 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 내용 중 다음과 같이 변경함
 - “의료보호법” ⇒ “의료급여법”
 - “의료보호법시행규칙”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 “의료보호법시행령” ⇒ “의료급여법시행령”
 - “의료보호기금” ⇒ “의료급여기금”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보호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3)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안 제7조제1항)
- 4)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은 의료급여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함. (안 제9조)

2.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기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조례의 제명을 개정
- 관련 조문중 개정법령의 명칭과 동일하게 개정
-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안제7조 제1항)
- 결손처분규정이 의료급여법 제24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안제9조)

□ 검토의견

- 의료보호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이 의료급여법(2001. 5. 24개정) 및 동시행령(2001. 9. 29개정) 동시행규칙(2001. 10. 9개정)으로 전문 개정되었고,
- 서울특별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가 2002. 3. 20 개정공포되었기
- 서초구 조례를 관련법령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안제4조 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 과 안제5조중 “기금출납명령관” 및 안제6조 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 안제6조 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 안제7조 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 은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 으로 각각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 안제8조 대불금의 상환 등은 동법시행규칙 제27조에 급여비용의 대불신청 및 상환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내용인 안제8조는 삭제함이 타당할 것이며,
- 안제9조의 2는 서울특별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 제7조에 명시되어 있고 내용 또한 서울시 조례에 저촉되어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자료

의료급여대상자현황 및 의료급여보조금집행현황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24조, 제26조 제4항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 제7조

수정안 대비 표

항	개	정	변	수	관	안
서울특별시시초구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및운용조례	서울특별시시초구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및운용조례	서울특별시시초구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및운용조례	서울특별시시초구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및운용조례	제명 (개정안과 같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험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서 의한 의료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험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서 의한 의료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험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서 의한 의료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험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서 의한 의료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3조(세입과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험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세입과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험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세입과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이하 "수급권 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세입과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이하 "수급권 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세입과세출) (개정안과 같음)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험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은 구의 사회복지과장, 금융 출납공무원은 복지지원업무담당차사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험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은 구의 사회복지과장, 금융 출납공무원은 복지지원업무담당차사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관리관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관리관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관리관		
제5조 (생략)	제5조(현행과 같음)	제5조(현행과 같음)	제5조(현행과 같음)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징수권에 관한 규정은 의료급여법 제16조		
제6조 (생략)	제6조(현행과 같음)	제6조(현행과 같음)	제6조(현행과 같음)	제6조(수입) ① 의료급여관리관 수입금 ② (생략) ③ 지체없이 의료급여관리관에게		
제7조(지출) ① 의료보험위원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험 을 위한 의료시술의 장의 의료보험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정하여 금융감독에 대별금을 구분결정 한 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조 정내역을 통보하고 대별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금융감독위원에게는 지출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의료보험위원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험 을 위한 의료시술의 장의 의료보험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정하여 금융감독에 대별금을 구분결정 한 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조 정내역을 통보하고 대별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금융감독위원에게는 지출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금융감독위원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1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대불금을 의료급여관리 관에게 지급하고 대별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금융감독위원에게는 지출인행위에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1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대불금을 의료급여관리 관에게 지급하고 대별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금융감독위원에게는 지출인행위에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의료급여관리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항	명	내	외
<p>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출납명령권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항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일일을 최초의 납입 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1992. 6.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p>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내의 납입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의 사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92. 6.17)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8조(헌법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p>제9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은 결손처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의료보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보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할 때에 한한다.)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제9조의2(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정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 및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p>	<p>제9조의2(보고 등)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p>	<p><삭제></p>	<p><삭제></p>

의료급여대상자 현황

계	기초생활보장 (1종)		국가유공자 (1종)		5.18관련자 (1종)		북한이탈주민 (1종)		이제자 (1종)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1종)		행려자 (1종)		시설보호자 (1종)		기타 (1종)		기초생활보장 (2종)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1,446	2,825	821	1,090	124	306	16	48	13	27	0	0	2	2	0	0	151	4	10	466	1,191

※ 1종 : 980세대 1,634명 2종 : 466세대 1,191명

2002년 의료급여 보조금 집행현황

구분	2002년		2001년		비고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30,259천원	20,910천원	4,236,700천원	4,228,473천원	△4,206,441천원
집행액		9,349천원		8,227천원	

(2002. 7. 15 현재)

구청별 의료급여 조례개정 현황

(사회복지과)

연번	기관명	개정여부	개정일
1	강남구청	×	
2	강동구청	×	
3	강북구청	○	2002. 2. 22
4	강서구청	○	2002. 4. 6
5	관악구청	×	
6	광진구청	○	2002. 7. 15
7	구로구청	×	
8	금천구청	○	2001. 12. 24
9	노원구청	×	
10	도봉구청	×	
11	동대문구청	×	
12	동작구청	×	
13	마포구청	○	2002. 5. 15
14	서대문구청	×	
15	성동구청	×	
16	성북구청	×	
17	송파구청	×	
18	양천구청	○	2002. 3. 15
19	영등포구청	○	2002. 4. 10
20	용산구청	○	2002. 5. 11
21	은평구청	×	
22	종로구청	○	2002. 6. 3
23	중구청	×	
24	중랑구청	○	2001. 12. 27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

제24조 (결손처분)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2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④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시행령 >

제15조 (결손처분) 법 제2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6조 (기금관리공무원) 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

제27조 (급여비용의 대불신청 및 상환방법 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 대불승인서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비용의 대불을 결정한 금액을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하여 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을 승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급여비용대불금을 지체없이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을 받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대불금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제28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금을 교부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 >

제7조 (예산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의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 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 계산서
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